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행정동우회 명칭 및 설립목적 변경〉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01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덕흠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2. 5.
3. 회 부 일 : 2026. 2.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동우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 법정 단체임.

그런데 지방행정동우회가 공익 실현을 위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회원 중심의 친목·복지 단체로 오인될 소지가 큼.

이에 지방행정동우회의 명칭을 지방행정회로 변경하는 한편 지방행정동우회의 사업을 회원 간 친목 사업에서 주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공익 실현을 위한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조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른 법정단체의 명칭을 “지방행정회”로 변경하고, 목적 및 사업을 회원 친목·복지 중심에서 주민 건강·복지 증진 등 공익사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려는 것임.

이는 지방행정동우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공익 목적의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상 회원 간 친목 도모 및 회원 복지 증진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 퇴직 지방공무원의 친목·복지단체로 인식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임.

현행	개정안
<u>지방행정동우회법</u>	<u>지방행정회법</u>
제1조(목적) 이 법은 <u>지방행정동우회</u> 를 설립하여 <u>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u>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지방행정회</u> ----- ----- <u>국가</u> ----- ----- -----.
제2조(설립) ① <u>지방행정동우회</u> (이하 “ <u>동우회</u> ”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u>지방행정회</u> ----- -----.
② <u>동우회</u> 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u>지방행정회</u> ----- ----- -----.
③ <u>동우회</u> 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u>지방행정회</u> ----- ----- ----- -----.

현행	개정안
제3조(정관) <u>동우회</u> 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정관) <u>지방행정회</u>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u>동우회</u> 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 <u>지방행정회</u> ----- -----
제4조(회원의 자격) ① (생략)	제4조(회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정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직 공무원 및 <u>동우회</u> 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행정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u>동우회</u>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 ----- ----- ----- <u>지방행정회</u> ----- ----- <u>지방행정회</u> ----- -----.
③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동우회</u> 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③ ----- ----- <u>지방행정회</u> ----- -----.
제5조(조직 등) ① <u>동우회</u> 는 중앙회, 지회 및 분회를 둔다.	제5조(조직 등) ① <u>지방행정회</u> ----- -----.
② <u>동우회</u> 의 중앙회와 중앙지회는 서울특별시에, 지회는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치시청·도청·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분회는 시청·군청·구청 소재지에 각각 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② <u>지방행정회</u> ----- ----- ----- ----- ----- -----.
③ <u>동우회</u> 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	③ <u>지방행정회</u> -----

현행	개정안
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사업) <u>동우회</u> 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사업) <u>지방행정회</u> -----
1. <u>지방자치단체</u>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1.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u> -----
2. <u>지방행정</u>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u>국가 및 지방행정</u> -----
3. <u>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u>	3. <u>주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사업</u>
4. <u>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u>	4. <u>그 밖에 지방행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u> -----
5. <u>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u>	<삭 제>
6. <u>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	<삭 제>
제11조(이사회) ① <u>동우회</u> 에 이사회를 둔다.	제11조(이사회) ① <u>지방행정회</u>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임원) ① <u>동우회</u> 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사무총장 1명,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 ① <u>지방행정회</u> -----
② (생략)	-----.
③ 회장은 <u>동우회</u> 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③ ----- <u>지방행정회</u> -----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동	-----.
	④ (현행과 같음)
	⑤ ----- <u>지</u>

현행	개정안
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u>방행정회</u> ----- -----.
⑥ 감사는 <u>동우회</u> 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한다.	⑥ ---- <u>지방행정회</u> ----- -----.
제13조(사무 부서) ① <u>동우회</u> 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사무 부서) ① <u>지방행정회</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재정) ① <u>동우회</u> 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4조(재정) ① <u>지방행정회</u> -----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제6조제2호 및 제3호</u> 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u>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u> ----- ----- ----- -----.

현행법의 제정 이유에 따르면, 퇴직 군인·경찰·교육·소방·교정 공무원 관련 단체는 각각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 및 지원을 받는 반면, 지방행정동우회는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점이 입법 필요성으로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전직 지방공무원이 공직을 통하여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0대 국회에서 현행법이 제정되었음.¹⁾

현행법은 지방행정동우회를 법인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 및 등기를 통하여 성립하도록 하며,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향군인회·재향경우회 등 다른 퇴직공무원 단체 관련 법률이 친목과 공익 기능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구조로 볼 수 있음.²⁾

그런데 지방행정동우회는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정단체의 지위를 가지면서도 회원 친목 및 복지사업을 독립된 사업영역으로 인정하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정 2020. 3. 31.)

현재 퇴직 군인, 경찰, 교육, 소방, 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는 각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지원을 받고 있으나, 지방행정동우회는 관련법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바, 지방행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고 지방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유사 입법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정 1961. 5. 10.)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정 1973. 12. 31.)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鄉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제정 2003. 7. 29.)

제1조(목적)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教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제정 2012. 3. 21.)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大韓民國在鄉消防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소방경험과 지식을 공유·발전시키고 나아가 소방선진화와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제정 2013. 7. 30.)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大韓民國在鄉矯正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교정경험과 지식을 공유·발전시키고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과 교정의 선진화 및 공익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있어, 단체의 정체성과 퇴직공무원 친목단체에 대한 공적 재원 지원³⁾의 적절성을 둘러싼 비판과 특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⁴⁾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주도하는 주체가 현직 지방 공무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동일 직역에 속하는 퇴직 지방공무원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방지 및 재정 민주성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보임.⁵⁾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첫째 법률의 제명을 「지방행정 동우회법」에서 「지방행정회법」으로 변경하고 명칭을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지방행정회’로 정비함으로써 ‘동우회’라는 표현이 주는 친목단체 이미지⁶⁾를 완화하는 한편, 둘째 목적조항에서 “회원 간 친목 도모”를 삭제하여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이라는 목적만을 유지함으로써 법정단체의 정체성을 공익 수행으로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셋째, 사업조항에서는 기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 사업”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국가’ 대상 사업으로 확장하고,

3)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재정)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9월자 이슈 보고서(「퇴직공무원 동우회에 예산을 지급하라」) 및 관련 분석에서,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을 근거로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수 지자체가 지방행정동우회에 보조금을 편성·집행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퇴직공무원 친목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재정민주주의 및 재정 형평성의 측면에서 특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 바 있음.

5) 서울신문, “우려가 현실로...지자체 퇴직공무원 친목단체인 행정동우회 지원액 왜 늘었나”, 2021.4.27.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27009042>

6) ‘동우회(同友會)’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목적 아래 뜻과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만든 모임”임.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을 “주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사업”으로 조정하며, “회원 간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과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삭제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급 근거를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익 사업으로 한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행정발전, 주민복지 등 공익성이 명확한 사업에 집중되도록 방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 주요 변경사항 》

구 분	현행법	개정안
법률 제명	「지방행정동우회법」	「지방행정회법」
단체 명칭	지방행정동우회(약칭 ‘동우회’)	지방행정회
목적(제1조)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
사업(제6조)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u>국가</u>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u>국가</u> 및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u>주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사업</u> 4. 그 밖에 지방행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보조금 지급 가능 사업 (제14조제2항)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1.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u> 2. 국가 및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u>주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사업</u>

이러한 개정 방향은 현행 지방행정동우회에 제기되었던 특혜·친목단체 우려를 완화하고, 법정단체로서의 공익적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예산 지원 대상을 현행법상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 사업”, “국가 및 지방행정 발전 사업”, “주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사업”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지방행정동우회의 역할을 협력·행정발전·주민복지 중심의 공익사업에 보다 명확히 집중시키고, 재정지원의 정당성과 대외적 설득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아가 지방행정 분야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지방재정·행정 운영과 직결되는 만큼, 다른 직렬의 퇴직공무원 단체보다 공익성에 대하여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입법정책상 유의미한 선택으로 보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개정안은 지방행정동우회를 “퇴직 지방공무원 친목단체”에서 “지방행정 경험을 기반으로 한 공익 수행 단체”로 재정의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재향군인회·재향경우회 등 유사 법률은 여전히 친목과 공익을 결합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군인·경찰·소방 등 다른 직역 퇴직공무

원 단체에 관한 법률도 퇴직자의 경험·전문성을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함께 회원의 권익 보호 또는 복지 요소를 일정 부분 포함하고 있는바,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해서만 친목·복지 요소를 삭제하여 회원 상호부조 기능을 법률상 전면 배제하는 것이 직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둘째, 명칭 변경이 다른 법률상 단체와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동우회’라는 용어가 주는 친목단체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하여 ‘지방행정회’라는 명칭을 제안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해당 명칭이 다른 법인의 명칭과의 관계에서 혼동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현행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으로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⁷⁾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6조는 공제회가 아닌 자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⁸⁾

7)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8)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닌 자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지방행정회’라는 명칭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동일하지는 않으나, ‘지방행정’과 ‘회’라는 핵심 요소를 공유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유사 명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바, 행정상 혼선이나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의 혼동 가능성이 적은 다른 명칭 사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현행 「지방행정동우회법」을 「지방행정회법」으로 변경할 경우 전직 지방행정공무원 단체라는 조직의 정체성이 제명만으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등 유사 입법례는 제명을 통하여 특정 직역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의 조직임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개정안의 제명은 이러한 입법례와 달리 단체의 성격을 지나치게 추상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명칭 변경의 필요성 및 명칭의 적정성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종합하면, 지방행정동우회 제도는 전직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행법은 친목·복지 기능과 공익 기능이 병존하면서 단체의 정체성과 보조금 지원의 정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온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공익사업 중심 구조로 전환하고, 지방행정 경험을 지역사회 건강·복지 증진과 행정 협력·발전에 활용하도록 법적 틀을 정비하려는 점에서 타당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임.

다만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 회원 기반 및 상호부조 기능의 유지 필요성, ‘지방행정회’ 명칭의 혼동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38